



제418회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30일 가산〉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59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2
<참고자료> 미숙아의 법적 정의 및 지원사항	5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2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하여 이런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4조).

Ⅲ. 검토의견

1.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¹⁾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거나 「모 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에 따 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 0일)----- --. ----- ----- ----- ---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75일)-----. ----- ----- ----- -----.
⑤ ~ ⑩ (생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4조제1항2)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2)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⑨ (생략)

모자보건법령에 따른 미숙아³⁾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더딘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미숙아의 건강관리 및 진찰·수술·간호 등 의료 서비스 및 집중 치료 시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법적 근거⁴⁾를 두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 선천성 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한편, 출산전후휴가 확대로 인해 오히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이나 사용자의 고용기피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 그리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 사용을 통해 개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 6788-5539

3)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함

4) 후면 참고자료 붙임: ‘미숙아의 법적 정의 및 지원사항’

참고

미숙아의 법적 정의 및 지원사항

구분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 상아의 정의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2. 선천성이상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및 지원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